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자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라.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마.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말한다.

4.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 이해관계인 ”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백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해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回事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자금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정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영업일 오후 4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이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의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상담요청) ① 고객은 자기의 재무 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운용제한)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중도해지)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별 인출가능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

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재산의 인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
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6.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자신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자연으로 인한 손실
3.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시행일)이 약관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서비스 명

1) 우리은행 일임형 안정형 ISA (안정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5등급 초저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MMF 및 국공채형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유동성과 안정성을 추구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1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2) 우리은행 일임형 국공채 ISA (안정추구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4등급 저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MMF 및 민기가 다양한 국공채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정기예금 초과수익을 추구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2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3) 우리은행 일임형 우량채 ISA (안정추구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4등급 저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다양한 국내채권형 펀드 및 MMF에 분산투자하여 정기예금 초과수익을 추구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2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4) 우리은행 일임형 회사채 ISA (안정추구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4등급 저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국공채형, 국내채권형 펀드 및 해외채권형 펀드 등에 분산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정기예금 초과수익을 추구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5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5) 우리은행 일임형 고배당30 ISA (위험중립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3등급 중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위험자산군에 30%이하로 투자, 채권형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운용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3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종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6) 우리은행 일임형 글로벌30 ISA (위험중립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3등급 중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위험자산군에 30%이하로 투자, 채권형 및 해외주식형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운용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3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종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7) 우리은행 일임형 공모주알파 ISA (위험중립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3등급 중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국내외 혼합형, 해외채권형 펀드 등에 분산투자로 시중금리 이상의 초과수익 추구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3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종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8) 우리은행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 (적극투자형)

구 分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2등급 고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위험자산군에 60%이하로 투자, 국내외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 등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 추구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4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종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9) 우리은행 일임형 글로벌50 ISA (적극투자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2등급 고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적극투자형/위험증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위험자산군에 50%이하로 투자, 국내외 채권, 주식형 펀드 등에 분산투자하여 운용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4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종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10) 우리은행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 (공격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1등급 초고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공격형/적극투자형/위험증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위험자산군에 95%이하로 투자, 다양한 스타일의 국내 주식형펀드(파생형포함)에 분산투자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5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종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11) 우리은행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 (공격형)

구 분	세 부 내 용
가입(계약) 금액	10,000원 이상 (연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위험도	1등급 초고위험
적합투자자 유형	공격형/적극투자형/위험증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위험자산군에 95%이하로 투자, 다양한 유형의 해외 주식형펀드에 분산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후취)	연 0.50%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 시
연체수수료	없음
종도해지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없음

2. 우리은행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1) 모델포트폴리오(MP)분류

- 투자위험별 :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2) 각 모델포트폴리오(MP)별 개요는 모델포트폴리오(MP) 설명서 준용

* 기타사항

- 편입된 개별 펀드 등의 보수는 모델포트폴리오 일임운용수수료와 별도로 펀드 내에서 부과됨
- 랩전용클래스(W클래스)를 활용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기타 클래스를 편입할 수 있음.
- 판매보수가 없는 W클래스 편입을 원칙으로 하나, W클래스가 없는 경우 기타 클래스를 편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 이하 수준에서 판매보수가 징수 될 수 있음.
- 후취 수수료 : 연율 기준으로 표시하되, 일별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대로 일할 계산하여 약정한 시점 또는 계약해지 시 징수(예탁자산 일평균 잔액 기준) 단, 전분기말 기준 또는 만기해지시, 수수료를 차감한 계좌별 평가 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함
- 가입펀드 약관 및 편입 기초자산에 따라 종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MP)별 자산배분 비중은 편입비중은 편입 상품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모델포트폴리오(MP) 설명서 참조



- 투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명칭은 []입니다.
※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상세내용은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투자일임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2호 나목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의무계약기간은 3년이며 신청만기는 [] 개월입니다.
※ 유의사항 : 만기는 최소 36개월 이상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본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추후 국세청 등을 통해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격통보를 받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자체 없이(14일 이내) 통보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는 일임계약의 내용,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모델포트폴리오간 내용의 차이,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보수 및 수수료, 조기 상환조건, 계약의 해지 및 연장, 과세특례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들었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는 약관, 계약권유문서, 계약 설명서,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계약을 통해 투자자와 회사는 약관, 계약권유문서, 계약 설명서,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에서 명시한 바에 구속됩니다.
 - 투자는 약관, 계약권유문서, 계약 설명서,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에 안내된 운용조건의 내용에 동의하며,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내용 및 운용 과정에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는 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한 개별 투자자산의 취득·처분 시 그 종목, 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 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안내받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사전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투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개별 투자자산의 종목, 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 투자는 투자일임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회사에 일임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 성향, 투자 대상자산의 범위 등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안정성·수익성, 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개별 투자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전영업일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총 납입한도^(주) : [] ■ 만기해지금 수령계좌(입출식계좌만 가능) : []
- 주)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투자자 본인은 상기 세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숙지하였으며, 기수령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계약 설명서,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가입과 그 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투자자

투자일임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회사명 :	(주)우리은행 (인)
지점명 :	
주소 :	
판매직원 :	

* 계약서 상의 음영 부분 및 투자자 기재란은 투자자 본인의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손실가능상품

【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권유문서

제1조(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① 투자일임의 범위

1.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2.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는 합리적 자산운용방식 선정
 3. 합리적 자산운용방식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명의로 투자일임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자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행위
- 다.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
5. 기타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대한 투자일임
6.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아니합니다.

②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1. 예금(타사), 적금(타사), 예탁금,
- 조세특례법시행령 제93조의4 제8항 제1호에 따른 예치금
2. 조세특례법시행령 제93조의4 제8항 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
5. 「소득세법」 제17조 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7.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제2조(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 ① 회사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고객과 운용유형 및 기타 운용조건을 협의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회사에 예탁한 고객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은 성립 됩니다.
- ③ 회사는 편입되는 투자일임자산의 성격상 별도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 타 금융기관에 투자일임자산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며,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있어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⑤ 고객은 자산운용내용을 투자일임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 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백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백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계약유형의 최소가입금액 이상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은 현금에 한합니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이 부담할 책임의 내용)

①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산운용사 및 운용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가.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합니다.

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과의 연락두절,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퇴사, 전출 등 선임된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후 지체없이 동 변경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4. 회사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의 회사의 금지행위를 참조하십시오.

② 고객의 의무 및 책임

1.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한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3.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을,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4. 자산인출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 등의 일임투자재산은 현금화에 일정기간(매도 후 결제)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인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국내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최장 5일 이전에 신청
나.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환매기간+2일
(영업일기준) 이전에 신청 (일반적으로 10~12일
소요되나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7조(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보수의 산정

1. 보수의 계산

기본(일반)보수는 고객께서 선택한 계약유형 및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평균 평가액에 해당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 보수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2. 보수 계산의 일반식

기본(일반)보수 = 투자일임재산의 평균 평가액 × 연보수율 × 연간경과일수/365

② 보수의 징수방법 및 시기

1. 매분기 최초 영업일(이하 보수 출금일)에 고객의 현금성 자산 등에서 인출합니다. 고객의 현금성 자산이 MMF인 경우, 주기적인 투자일임 보수 출금거래에 대하여 관계법령, 집합투자증권 개별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 출금일 현재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당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징수합니다. 단, 전분기말 기준 또는 만기해지시, 보수를 차감한 계좌별 평가금액이 원금미만일 경우 면제합니다.

3. 고객은 현금성 자산 등에 현금이 부족하여 보수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수 납부기한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보수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4. 보수 납부기한 내에 보수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계좌의 투자일임자산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보수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추가비용의 징수

회사는 보수 외에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세금 및 기타비용,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제8조(고객 투자 성향별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은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자산배분이 이루어집니다.

②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1.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다만, 초저위험 유형의 경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종: 예•적금, 예탁금, 예치금(금융투자상품제외), 환매조건부매매증권>

<2종: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3종: 파생결합증권>

3.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 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편입 하는 행위
4. 계약만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의 편입금지. 다만, 고객이 편입동의한 경우 제외합니다.

③ 분산규정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까지 적용유예 합니다.

1.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2.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개시 시점부터 3개월 까지
3.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만기 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제9조(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① 투자실적 및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집합투자증권은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제공하는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ELS등 파생결합증권은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시가 또는 회사에서 정한 이론가로 평가합니다.

3.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시가기준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기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배분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실행(운용)시 통보방법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 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전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해당 투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④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회사는 투자결과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직접, 우편 또는 전자매일 중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발송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보고서 발송시기
1 월~3 월	4 월
4 월~6 월	7 월
7 월~9 월	10 월
10 월~12 월	1 월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의 변경

1. 회사는 수수료 징수기준 등의 약관 변경시 시행 1개월 전에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의 시행일 1개월 전일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에 응합니다

②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해지일 즉 빠른 날(손익통산시점)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를 이용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투자일임자산의 보유, 일부 또는 전부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중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는 개별약관에 따라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고객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좌에서 투자일임 재산을 중도에 해지,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금융상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 하여야 합니다.

7.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자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2.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른 같은 종류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의 종도해지

1. 회사는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제10조 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추징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④ 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지

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의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종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시장 상황이나 금융상품의 성질 등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 종료나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종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의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종단되며,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고객에게 현금화하여 지급하거나, 운용현상 대로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현금 환가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나 금융상품 성질 등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적격자 통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계좌보유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효율적 매매를 위한 주문처리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다수 고객의 매매 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고객계좌 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투자일임계좌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합니다.

1. 고객계좌별 주문기록 작성 및 보관: 계좌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 보관합니다.

2. 매매결과에 대한 고객 계좌별 배분: 매매결과에 따른 자산은 제2항 제3호의 배분기준에 따라 각 계좌 별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3. 배분기준

가. 배분수량: 매매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배분합니다.

1) 1차배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정수의 수량 만을 배분

2) 2차배분: 정수로 배분 후 남는 수량은 체결 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3) 3차배분: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4) 4차배분: 체결배분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분, 추후에는 계좌번호 늦은 순서대로 배분처리

나. 배분가격: 매매종목에 대한 총 체결금액을 전체 체결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사용합니다.

다. 금액의 배분: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된 수량과 배분가격을 곱한 배분금액을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가장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배분금액이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배분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1원씩 배분하여 각 계좌별 배분금액을 산출합니다.

라. 매매단가 및 수량: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금액을 배분수량으로 나눈 매매단가를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원단위 미만 올림과 버림한 두개의 정수단가를 산출하고, 해당 단가별 수량을 계산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결제처리 후 매매단가와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특정계좌에서 자산구성이 운용자의 운용전략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배분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달리 적용 또는 별도의 주문집행이 가능합니다.

제12조(투자일임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별지1.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 경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고객 자신의 운용에 있어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 내 전문 운용 인력이 운용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담당매니저에 대한 정보는 별지에서 제공됩니다.

② 고객은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은행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별지2. 은행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금지사항

자세한 사항은 「별지3. 회사의 금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투자일임계약의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3.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계약유형 및 투자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공된 모든 과거운용 성과자료 또는 모의운용 성과자료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당행은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권유문서 및 부속 별지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대상, 운용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주요경력

1. 투자일임 담당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최성호	조사분석 13년, 자산운용 13년 現) 우리은행 일임형ISA 운용역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박형열	자산운용 8년 現) 우리은행 일임형ISA 운용역 NH농협은행 WM연금부(일임형ISA 운용) SK증권 Equity파생팀 SK증권 장외파생상품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2. 제 1항의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없음)

[별지2. 은행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은행의 임원

(2023년 7월 3일 기준, 단위 : 주)

성 명	직 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조병규	은행장	등기임원	상근	총괄	'18.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상무/부행장보 '20.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22. 우리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23.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
양현근	상임감사위원	등기임원	상근	감사	'15.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6. ~ '19.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20. ~ '23. 엘кан토 감사, 카사코리아 고문	-
정찬형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7.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15.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
김준호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13.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15.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現) 법무법인 윤촌 고문	-
박승두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7.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現) 한국법률경영연구원장 現) 한국채무자회생법연구소장	-
윤수영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7. 키움증권(주) 경영기획실장, 영업지원본부 자산운용본부 총괄전무 '10.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16. 키움증권(주) 부사장	-
이석태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영업부문	'17.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본부장 '19.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단 상무 '20. 우리금융지주 신사업총괄 전무 '20. 우리금융지주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22.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	-
강신국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기업투자금융부문	'20. 우리은행 IB그룹 상무 '20. 우리금융지주 CIB총괄 상무(겸직) '20. 우리종합금융 CIB사업본부총괄부사장(겸직) '20.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보 '22.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	-
이문석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자금시장그룹	'17.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8. 우리은행 미래2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19. 우리은행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영업본부장 '19.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0. 우리은행 IB그룹 집행부행장보	-
고정현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IT그룹	'16. 우리은행 플랫폼사업부 본부장 '17. 우리은행 강서양천영업본부 영업본부장 '18. 우리은행 정보보호그룹 상무 '20. 우리은행 정보보호그룹 집행부행장보	-
장광익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브랜드홍보그룹	'12~'13.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차장 '13~'17. MBN 정치부장 '17~'22. MBN 사회부장, 시사제작부장, 경제부장 '22~'22. MBN 보도국장, 기획실장	-
성윤제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여신지원그룹	'16. 우리은행 여신정책부 부장 '18. 우리은행 여신정책부 본부장 '19.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인천부천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윤석모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그룹	'14. 우리은행 영업지원부 부장 '15. 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8. 우리은행 우리월스뱅크필리핀 본부장	-

성명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송현주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자산관리그룹	'18.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고객센터 본부장 '20. 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본부장 '21. 우리은행 동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2.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그룹 집행부행장보	-
김백수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정보보호그룹 (정보보호최고 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고객정보관리인)	'18. 우리은행 IT지원센터 부장 '19. 우리은행 IT기획부 부장 '19. 우리은행 IT기획부 본부장 '20. 우리은행 IT전략부 본부장	-
유도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그룹 (공시책임자 내부회계관리자 전략기획·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15. 우리은행 비서실 실장 '17. 우리은행 런던지점 지점장 '21. 우리은행 런던지점 본부장	-
옥일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디지털전략그룹 (최고디지털책임자 (CDO))	'09. 더보스톤컨설팅그룹 컨설팅팀 Principal '18. EY컨설팅 전략부문 리더(파트너) '20. 에이티커니코리아 금융그룹리더(부사장)	-
기동호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IB그룹	'13.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지점장 '14. 우리은행 미래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16. 우리은행 동역산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 본부장	-
김범석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부동산금융그룹	'12. 우리은행 삼성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14. 중국우리은행 부장대우 '18.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18.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부장(심사역) '19.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분부장(심사역)	-
류형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외환그룹	'17. 우리은행 광희동지점 지점장 '19. 우리은행 무역센터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외환업무센터 본부장 '20.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 본부장 '21. 우리은행 인천부천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박구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감시인	'17. 우리은행 인사부 부장 '19.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중앙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박장근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리스크관리그룹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15.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부장 '16.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부장 '19.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본부장 '20.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본부장	-
조병열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CCO))	'16.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7.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부장 '19.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본부장 '20. 소비자보호부 본부장 '21. 우리은행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2.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단위 : 주, 기준일 : 2023.6.30)

관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최대주주	(주)우리금융지주	716,000,000	100.00	-

[별지3. 회사의 금지행위]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에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와 관련된 특정증권 등(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자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라.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 마.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바.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본 설명서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약관, 계약서, 계약권유문서,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외 판매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부 받으신 서류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상품에 투자된 자금의 대부분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모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됩니다. 일부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 상품에 한하여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만기에 금융상품의 운용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자산관리계좌

구분	19세 이상 거주자		15세~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대상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가입 서류	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만기	개별 계약에 따름				
의무 보유기간	3년				

* 투자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세청장이 가입연도 및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를 통보합니다.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일임형ISA와 신탁형ISA 비교

구 분	일임형ISA	신탁형ISA
투자방법	투자가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투자	투자가 1:1로 운용지시
리밸런싱	금융회사가 투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 특성에 적합하게 운용	가입자가 상품변경을 건별 지시
추천고객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 성향에 적합한 성과를 추구하는 고객님께 추천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투자하려는 고객님께 추천
최소 가입금액	1만원	개별상품별로 상이
보수체계	0.1%~0.5%	신탁보수(0.1%~0.8%) + 개별판매보수
온라인가입	가능	불가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구 분	내 용
만기자금 지급시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자산은 만기 시점부터 환매·매도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만기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자산이 모두 환매·매도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운용방법의 변경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투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성향, 투자대상 자산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투자는 가입기간 중 금융투자회사의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자금 연금납입	고객이 만기 ISA 자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연금계좌 보유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고, 만기 ISA 자금을 연금으로 납입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권리보호 안내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위법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합니다.
숙려제도·청약철회제도 [대상자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려제도 : 고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숙려기간 적용대상 일임 계약에 한하여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후 은행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이 해지됩니다. * 청약의 철회 :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숙려기간 부여 및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 '투자일임계약'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의미합니다.</p>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고객님께서는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 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02-2008-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 : 총 11종의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 초저위험 : 1종, 저위험 : 3종, 중위험 : 3종, 고위험 : 2종, 초고위험 : 2종

투자자유형	모델포트폴리오명	서비스유형	운용방식
공격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공격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공격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적극투자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적극투자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50 ISA(적극투자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위험중립형	우리 일임형 고배당30 ISA(위험중립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30 ISA(위험중립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우리 일임형 공모주알파 ISA(위험중립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안정추구형	우리 일임형 회사채 ISA(안정추구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우리 일임형 국공채 ISA(안정추구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우리 일임형 우량채 ISA(안정추구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안정형	우리 일임형 안정형 ISA(안정형)	펀드운용형	본사운용형

* 본사운용형 : 우리은행 ISA일임팀의 담당 운용역이 포트폴리오의 편입종목,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고 운용합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2021년 8월 기준)

[초저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위험도 (리스크스코어)	편입비중(%)	
		우리 일임형 안정형 ISA(안정형)	
국공채형 펀드	초저위험(2)	50%	
유동성자산(MMF 등)	초저위험(2)	50%	
위험자산군(초고위험+고위험)편입비중		0%	
포트폴리오 위험도		초저위험(2.0)	

▶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현황은 2017년 1월 기준이며, 최초계약 체결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편입 상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위험도 (리스크스코어)	편입비중(%)		
		우리 일임형 국공채 ISA(안정추구형)	우리 일임형 우량채 ISA(안정추구형)	우리 일임형 회사채 ISA(안정추구형)
국공채형 펀드	초저위험(2)	90%		40%
국내채권형 펀드	저위험(4)		90%	15%
해외채권형 펀드	중위험(6)			40%
유동성자산(MMF 등)	초저위험(2)	10%	10%	5%
위험자산군(초고위험+고위험)편입비중		0%	0%	0%
포트폴리오 위험도		저위험(2.2)	저위험(3.8)	저위험(3.9)

▶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현황은 2017년 1월 기준이며, 최초계약 체결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편입 상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위험도 (리스크스코어)	편입비중(%)		
		우리 일임형 고배당30 ISA(위험중립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30 ISA(위험중립형)	우리 일임형 공모주알파 ISA(위험중립형)
해외주식형 펀드	초고위험(10)	-	30%	-
국내주식형 펀드	초고위험(10)	30%	-	-
국내혼합형 펀드	중위험(6)	-	-	60%
해외채권형 펀드	중위험(6)	-	-	30%
국내채권형 펀드	저위험(4)	60%	60%	-
유동성(MMF 등)	초저위험(2)	10%	10%	10%
위험자산군(초고위험+고위험)편입비중		30%	30%	0%
포트폴리오 위험도	증위험(5.6)	증위험(5.6)	증위험(5.6)	증위험(5.6)

- ▶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현황은 2017년 1월 기준이며, 최초계약 체결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편입 상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내/해외주식형펀드 및 해외채권형펀드는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격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하는 국가의 통화가치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모델포트폴리오에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상품별 핵심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주식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자산 가격 변동 ③ 거래량 부족 시 가격 하락 위험 등
 - 해외주식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투자국가 시장, 정치, 경제 상황 ③ 기타 국내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위험도 (리스크스코어)	편입비중(%)	
		우리 일임형 글로벌50 ISA(적극투자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적극투자형)
해외주식형 펀드	초고위험(10)	25%	-
국내주식형 펀드	초고위험(10)	25%	-
해외혼합형 펀드	초고위험(10)	-	50%
대안투자형 펀드	초고위험(10)	-	10%
해외채권형 펀드	중위험(6)	15%	-
국내채권형 펀드	저위험(4)	30%	35%
유동성(MMF 등)	초저위험(2)	5%	5%
위험자산군(초고위험+고위험)편입비중		50%	60%
포트폴리오 위험도		고위험(7.2)	고위험(7.5)

- ▶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현황은 2017년 1월 기준이며, 최초계약 체결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편입 상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내/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혼합형, 대안투자형 펀드는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의 가격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하는 국가의 통화가치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모델포트폴리오에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상품별 핵심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주식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자산 가격 변동 ③ 거래량 부족 시 가격 하락 위험 등
 - 해외주식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투자국가 시장, 정치, 경제 상황 ③ 기타 국내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등
 - 해외혼합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투자국가 시장, 정치, 경제 상황 ③ 기타 해외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등
 - 대안투자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투자자산 상황 ③ 기타 국내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등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종류	위험도 (리스크스코어)	편입비중(%)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공격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공격형)
해외주식형 펀드	초고위험(10)	-	95%
국내주식형 펀드	초고위험(10)	65%	-
국내주식파생형 펀드	초고위험(10)	30%	-
유동성(MMF포함)	초저위험(2)	5%	5%
위험자산군(초고위험+고위험)편입비중		95%	95%
포트폴리오 위험도		초고위험(9.6)	초고위험(9.6)

- ▶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현황은 2017년 1월 기준이며, 최초계약 체결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편입 상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내/해외주식형 펀드는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하는 국가의 통화가치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모델포트폴리오에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상품별 핵심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주식형/국내주식파생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자산 가격 변동 ③ 거래량 부족 시 가격 하락 위험 등
 - 해외주식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투자국가 시장, 정치, 경제 상황 ③ 기타 국내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등
 - 해외혼합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투자국가 시장, 정치, 경제 상황 ③ 기타 해외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등
 - 대안투자형 : 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불가 ② 투자자산 상황 ③ 기타 국내주식형과 유사한 위험 등

3. 편입되는 상품의 특징

(1) 공모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상세 금융투자상품 유형별 특징

구 분	특 징
해외주식형 펀드	주로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국내주식형 펀드	주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국내주식파생형 펀드	주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주가지수 선물, 옵션 ETF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대안투자형 펀드	주로 대안투자상품(리츠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해외혼합형 펀드	주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혼합하여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국내혼합형 펀드	주로 국내 주식과 채권에 혼합하여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해외채권형 펀드	주로 해외채권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국내채권형 펀드	주로 국내채권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국공채형 펀드	주로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유동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군

4. 모델포트폴리오 자산배분절차

(1) 자산군별 비중 확정 : 분기 1회 이상 우리은행 자산배분결정위원회(자산배분전략가, 외부기관 전문가, 운용역 등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시장, 경제 전망 등을 기초로 전술적 자산배분 실시

(2) 상품 선정 및 운용

- ① 상품별 담당부서의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유니버스 후보군 선별
- ②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유니버스 Pool 조정 및 확정
- ③ 매분기 1회 이상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모델포트폴리오 선정 및 관리
- ④ 정량/정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ISA일임운용팀 운용역이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에 맞춰 최종편입 상품 결정

5.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1) 구분기준 및 운용 방식의 차이

- 구분기준 : 포트폴리오 위험도에 따라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으로 구분
- 운용방식의 차이 : 모델포트폴리오 별 투자전략을 기초로 변동성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운용

(2) 모델포트폴리오 투자전략

구 分	투자전략
우리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공격형)	글로벌주식형 펀드를 기반으로 특정섹터 및 테마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공격형)	국내 배당주 펀드를 기반으로 성장주, 가치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식형(파생형포함) 펀드로 스타일을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적극투자형)	국내외 고배당주식과 고수익채권형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글로벌50 ISA(적극투자형)	국내외 채권 및 주식형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공모주일파 ISA(위험중립형)	시중금리 이상의 초과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내혼합형 및 해외채권형펀드 등에 분산투자 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글로벌30 ISA(위험중립형)	국내 채권형펀드를 기반으로 해외주식형펀드에 30%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고배당30 ISA(위험중립형)	국내 채권형펀드를 기반으로 국내주식형펀드에 30% 분산투자 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회사채 ISA(안정추구형)	국공채형 펀드를 기반으로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우량채 ISA(안정추구형)	MMF를 기반으로 다양한 만기 및 유형의 국내 채권형펀드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유동성과 안정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국공채 ISA(안정추구형)	MMF를 기반으로 다양한 만기의 국내 국공채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유동성과 안정성을 추구
우리 일임형 안정형 ISA(안정형)	MMF를 기반으로 만기 1년 이내 국내 국공채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 유동성과 안정성을 추구

(3) 모델포트폴리오 구조

투자자유형	모델포트폴리오명	위험도	포트폴리오 구조
공격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공격형)	초고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해외주식형 펀드에 0~95%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5% 내외로 투자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공격형)	초고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주식형 펀드에 0~65% 내외, 주식파생형펀드에 0~3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5% 내외로 투자
적극투자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적극투자형)	고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해외혼합형 펀드에 0~50% 내외, 대안투자형 펀드에 0~10% 내외, 국내채권형 펀드에 0~35%, 현금성 자산 등에 0~5% 내외로 투자
	우리 일임형 글로벌50 ISA(적극투자형)	고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해외주식형 펀드에 0~25% 내외, 국내주식형 펀드에 0~25% 내외, 해외채권형 펀드에 0~15%, 국내채권형 펀드에 0~3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5% 내외로 투자

투자자유형	모델포트폴리오명	위험도	포트폴리오 구조
위험중립형	우리 일임형 공모주알파 ISA(위험중립형)	중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혼합형 펀드에 0~60% 내외, 해외채권형 펀드에 0~3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10% 내외로 투자
	우리 일임형 글로벌30 ISA(위험중립형)	중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채권형 펀드에 0~60% 내외, 해외주식형 펀드에 0~3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10% 내외로 투자
	우리 일임형 고배당30 ISA(위험중립형)	중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채권형 펀드에 0~60% 내외, 국내주식형 펀드에 0~3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10% 내외로 투자
안정추구형	우리 일임형 회사채 ISA(안정추구형)	저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공채형 펀드에 0~40% 내외 해외채권형 펀드에 0~40% 내외, 국내채권형 펀드에 0~15% 내외 및 현금성 자산에 0~5%로 투자
	우리 일임형 우량채 ISA(안정추구형)	저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채권형 펀드에 0~9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10% 내외로 투자
	우리 일임형 국공채 ISA(안정추구형)	저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채권형 펀드에 0~9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10% 내외로 투자
안정형	우리 일임형 안정형 ISA(안정형)	초저위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채권형 펀드에 0~50% 내외, 현금성 자산 등에 0~50% 내외로 투자

6.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의미 및 유의사항

(1) 상품별 위험도

구분	초고위험 (리스크스코어:10)	고위험 (리스크스코어:8)	중위험 (리스크스코어:6)	저위험 (리스크스코어:4)	초저위험 (리스크스코어:2)
펀드	국내주식형, 국내주식파생형 해외주식혼합형, 해외주식형	국내주식혼합형, 해외채권혼합형	국내채권혼합형, 해외채권형	국내채권형	MMF, 국공채형

* 우리은행 투자권유준칙 내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의해 산출된 위험등급입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산출 방식

- 편입 개별금융상품의 위험도와 투자비중을 가중하여 위험도 산출
- * 리스크스코어* 구간별 위험도 : 2이하 - 초저위험, 2초과 4이하 - 저위험, 4초과 6이하 - 중위험, 6초과 8이하 - 고위험, 8초과 - 초고위험
- (예시)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리스크스코어란? 상품의 위험을 스코어화 한 수치로 금융위원회 일임형 ISA 모범규준을 준용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리스크 스코어	10	8	6	4	2
편입 비중	50%	-	15%	30%	5%

*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 $10*50\% + 6*15\% + 4*30\% + 2*5\% = 7.2 \rightarrow$ 고위험 포트폴리오

(3) 위험도별 유의사항

위험도	모델포트폴리오명	유의 사항
초고위험	우리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공격형)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공격형)	
고위험	우리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우리 일임형 글로벌50 ISA(적극투자형)	
중위험	우리 일임형 고배당30 ISA(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우리 일임형 글로벌30 ISA(위험중립형)	
	우리 일임형 공모주알파 ISA(위험중립형)	
저위험	우리 일임형 회사채 ISA(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우리 일임형 국공채 ISA(안정추구형)	
	우리 일임형 우량채 ISA(안정추구형)	
초저위험	우리 일임형 안정형 ISA(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7.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투자 위험	모델포트폴리오명	일임운용보수	펀입펀드 보수 및 수수료 등				합계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무보수 등	
공격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공격형)	연 0.5% (분기당 후취)	0%	0.10%~1.00%	0.03%~0.08%	0.01%~0.03%	0.64%~1.61%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공격형)		0~0.03%	0.10%~0.88%	0.01%~0.04%	0.01%~0.02%	0.62%~1.47%
적극 투자형	우리 일임형 글로벌인컴 ISA(적극투자형)	연 0.4% (분기당 후취)	0%	0.05%~0.55%	0.01%~0.05%	0.01%~0.03%	0.47%~1.03%
	우리 일임형 글로벌50 ISA(적극투자형)		0~0.03%	0.10%~0.90%	0.01%~0.05%	0.01%~0.03%	0.52%~1.41%
위험 중립형	우리 일임형 공모주알파 ISA(위험중립형)	연 0.3% (분기당 후취)	0%	0.10%~0.47%	0.02%~0.04%	0.01%~0.03%	0.43%~0.84%
	우리 일임형 글로벌30 ISA(위험중립형)		0%	0.10%~0.15%	0.01%~0.04%	0.01%~0.03%	0.42%~0.52%
	우리 일임형 고배당30 ISA(위험중립형)		0~0.03%	0.10%~0.70%	0.01%~0.04%	0.01%~0.03%	0.42%~1.10%
안정 추구형	우리 일임형 회사채 ISA(안정추구형)	연 0.5% (분기당후취)	0%	0.10%~0.55%	0.02%~0.04%	0.01%~0.03%	0.63%~1.12%
	우리 일임형 우량채 ISA(안정추구형)	연 0.2% (분기당 후취)	0%	0.08%~0.16%	0.02%~0.03%	0.01%~0.03%	0.31%~0.42%
	우리 일임형 국공채 ISA(안정추구형)		0%	0.07%~0.15%	0.02%~0.03%	0.01%~0.03%	0.30%~0.41%
안정형	우리 일임형 안정형 ISA(안정형)	연 0.1% (분기당 후취)	0%	0.07%~0.10%	0.01%~0.03%	0.01%~0.01%	0.19%~0.24%

- 일임운용보수는 매분기 첫 영업일 또는 계약해지시에 기간별 평균 평가금액 기준으로 정수. 단 전분기말 기준 또는 만기해지시, 일임운용보수를 차감한 계좌별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면제함.
- 계약종료일 이후 계약해지를 위한 투자자의 별도 행위가 없는 경우, 그 이후에 적용되는 일임 보수율은 기 적용 보수율의 1/2로 적용
- 펀입된 개별 펀드 등의 보수는 모델포트폴리오 일임운용수수료와 별도로 펀드 내에서 부과됨
- 판매보수율 : 웹 전용클래스(W클래스 등) 펀입으로 대부분 판매 보수가 0이나, 일부 펀드에서는 2.0%이하 수준 판매보수가 정수 될 수 있음
- 판매보수가 없는 W클래스 펀입을 원칙으로 하나, W클래스가 없는 경우 기타클래스를 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이하 수준에서 판매보수가 정수될 수 있음

8. 모델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1) 분기단위로 시장 방향성 점검을 통한 정기적 리밸런싱(전반적 조정) 실시
- (2) 월간단위로 자산 내 상품교체, 스타일, 지역비중 등 미시적 관점의 교체 진행
- (3) 시장 급변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한 긴급의사결정으로 비정기적 리밸런싱 진행
- (4) 리밸런싱 수행시, 기준가 및 결제, 환매수수료 기간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장에 대한 사항

- ①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전영업일 16시까지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계약 만기일 전 계좌보유자가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유자산의 환매·매도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 ③ 세제혜택은 만기 연장 후 유형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세제혜택에 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시 :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자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장 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인 200만원 적용)
- ④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시 서민형으로 연장하였지만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서민형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일반형으로 취급하여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된다.
- ⑤ 계좌보유자가 만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제혜택 부여를 위해 계좌 내 자산은 환매·매도된다

1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종도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사항

-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고객사망, 해외이주,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고객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고객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하는 경우에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도해지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18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적격하다고 통보 받은 고객의 경우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과세특례적용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기간만료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화되지 않은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자산은 만기 시점부터 환매·매도되며 이에 따라 실제 만기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자산이 모두 환매·매도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능하다.(즉, 만기일에 투자가 만기대금을 즉시 수취 불가능)

- ※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해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동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특정 종목의 투자증권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일임형 ISA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투자일임계약의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3.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계약유형 및 투자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공된 모든 과거운용 성과자료 또는 모의운용 성과자료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당행은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권유문서 및 부속 별지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대상, 운용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이행확인	• 가입하신 일임형ISA 상품에 대해 판매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판매 직원 (인/서명)
-----------	--	-----------------



□ 모델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 ✓ 모델포트폴리오 변경은 기존 일임형 ISA계좌는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유지하되 본인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편입되어 있던 금융상품을 매도하고 새로운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매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시 기존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던 금융상품 매도에 따라 환매 수수료(펀드), 중도상환비용(파생결합증권), 금리손실(예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던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인한 해당 상품의 매도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의무납입기간 미충족 시 환매수수료가 크게 발생하는 등 투자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시 환매 예상금액과 변경된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한 매수금액은 환매일의 기준가,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기존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던 상품의 특성에 따라 환매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 변경된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등급에 따라 일임보수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가입자는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 전 상기 상황을 충분히 설명 듣고 변경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변경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 ✓ 모든 또는 일부 편입 금융상품의 환매가 완료된 후 변경된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지시가 이루어지며, 이후 변경된 모델포트폴리오 또는 운용종목 비중에 따라 당사 운용역에 의해 해당 자산이 운용됩니다.
- ✓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의 계좌, 부적격자 통보 등 일부 사유로 인해 운용방법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모델포트폴리오 운용방법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내용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설명들었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명 :

서명 또는 (인)

※ 변경요청사항 및 음영부분은 반드시 가입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0212181